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5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잘못 지급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환수방법에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22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2조제1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 그밖에, 안 제15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어법에 맞게 첨가하는 것 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의 제22조(포상금의 환수)제2항은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